

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

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지원을 위한 『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』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.

2026. 08. 10.

파 주 시 장

1. 근무기간 : 2026. 9. 1. ~ 2026. 12. 31. ※ 근무시작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

2. 근무조건 및 모집분야

세부유형	근무시간 및 급여	모집분야
시간제	· 8~11월 주20시간 / 월 1,078,440원 · 12월 주19시간 / 월 1,022,720원 ※ 4대보험 가입, 퇴직금 별도	· 파주보건소 급식지원 1명

*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 공제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* 12월 정상근무 운영 시 배치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(정상근무시 1~11월 보수와 동일, 단축근무 시 급여 변동될 수 있음)

3. 모집기간

가. 공고기간 : 2026. 08. 10.(월) ~ 2026. 08. 14.(금)

나. 접수기간 : 2026. 08. 10.(월) ~ 2026. 08. 14.(금) 09:00~18:00

※ 점심시간 및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접수 불가

4. 신청방법 : 방문접수

가.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복지동 1층 노인장애인과

나. 유의사항 :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

5. 신청자격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

가.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
나. 2026. 8. 1. 기준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
다.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제한대상이 아닌 자

【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제한대상 】

- 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※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*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
- 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※ 단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③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
- ④ 신청 당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※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※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됨
- ⑥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
6. 제출서류

필수서류	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자필서명 필수) 1부 ②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자 근무관련사항 확인서(자필서명 필수) 1부 ③ 참여자 정보 확인서(자필서명 필수) 1부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(자필서명 필수) 1부
추가서류 * 해당자에 한함	① 자격증 소지자) 희망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 졸업예정자)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여성가장)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㉠ ~ 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첨부서류 각 1부 ㉠ 미혼여성 ㉡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㉢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와 동거중인 여성 ※ 부양인정기준 :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(조)부모 또는 배우자의 (조)부모를 부양,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 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
	첨 부 서 류	
	구 분	
추가서류 * 해당자에 한함	공통사항	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
	선택사항	부모 부양 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증명서 등)
		가출 · 행방불명 실종신고서
		장애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
		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
		군복무 복무확인서
		학교 재학 재학증명서
		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
		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	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
		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·반장의 확인서
	④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	
	【 취업지원대상자 기준 】 - 「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4조	
	⑤ 신청일 현재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	
	- 근로종료일 확인 가능한 근로계약서 1부 ※ 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(전일제, 시간제) 참여 중인 경우, 미제출	
	⑥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 제한된 자	
	- 참여제한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 증빙서류 제출	
	⑦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등	
	- 상장사본(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) - 상장사본(장애인일자리관련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 표창) ※ 최근 3년(23~25년) 이내 사용 가능	

7. 선발방법 : 서류심사 및 선발위원회 면접심사를 통한 모집분야별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
가. 1차 서류심사: 2026. 8. 18.(화) ~ 2026. 8. 21.(금) ※ 1차서류합격 및 면접대상자 개별문자통보
나. 2차 면접심사: 2026. 8. 24.(월) ~ 2026. 8. 26.(수) ※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

8. 결과발표 : 2026. 8. 27.(목) 합격자 개별통보예정 ※ 발표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

9. 기타 참고사항

가. 신청서류는 접수 후 선정결과 발표까지 열·공람 및 보완 제출할 수 없으며, 기재누락에 의한 심사평가의 영향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

나. 접수마감 이후 심사 및 결과발표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다. 심사결과 및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

라. 선발 후, 수행직무 및 배치기관은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희망직무 및 배치기관과 다를 수 있음

마. 심사결과 최종선발이 되지 않은 신청자는 대기자로 관리되며 향후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사업개시 이후에도 해당직무 및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수 있음

바. 참여 중 사업유형 변경 시, 해당유형 중단 후 재참여하는 것임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고 유급휴가(연가)의 경우 1개월 개근 시,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함

※ 예시 : 1월 1일~5월 31일까지 전일제였다가 6월 1일~12월 31일까지 시간제로 참여할 경우, 1년간 근무하였어도 퇴직금 미지급

사.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

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**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**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아.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

- 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해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“취업제한기간”)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”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
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
*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

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기간”이라 한다)동안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“노인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자.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

*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(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)

10. 문의사항 :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☎ 031-940-8414)